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3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박상웅 • 성일종

이헌승 · 서천호 · 김민전

김소희 • 이양수 • 고동진

안상훈 • 윤영석 • 강대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,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,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동종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범죄태양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적용한 것임.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본 1년~3년,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9월~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므로 실질적으로 입법취지를 다하

지 못하고 동종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 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). 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3제1항 중 "1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3(촬영물과 편집물 등을	제14조의3(촬영물과 편집물 등을
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	이용한 협박·강요) ①
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	
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	
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, 제14	
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	
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	
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	
을 협박한 자는 <u>1년</u> 이상의 유	<u>3년</u>
기징역에 처한다.	·.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	②
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	
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	
<u>3년</u>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	<u>5년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